

Ⅱ - 49	제 목	합병시 등록일 인정		
회신일자	2004년 7월 21일	회신방법	산자부 사이버민원실	
의 요 지				
질의) 전기공사업체 A법인(등록연월일 : 2002. 5. 17)과 B법인(등록연월일 : 1995. 5. 17)이 합병하여 A법인이 존속할 경우 어느 법인 등록연월일로 인정하여 주는가?				
회 신 내 용				
답변) 전기공사업체가 다른 전기공사업체를 합병한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영위기간이 합산되므로 1995. 5. 17부터 현재까지를 영업기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